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8. 13. 오세희의원 등 21인

나. 회부일자: 2024. 8.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0.) 상정 · 제안설
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제3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 상정 · 소위심
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세희의원)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 급증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유통건수는 235건, 부정유통액은 539억원으로 집계 됐으며 이중 92%가 지류형 상품권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됨.

이에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7제2항 신설 및 제72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

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7제2항 신설).

개정안은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 장관이 그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개정안의 취지는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충전식 체크카드 및 모바일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온누리상품권의 ‘발행·판매’는 현행법 제26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의 사무이므로 이를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이 경우 현행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현행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현행법 제26조의7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은 환전대행가맹점이나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종이상품권과 달리 별도의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 및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권칠승의원, 김위상의원, 김원이의원, 오세희의원, 장철민의원, 이종배의원, 위성곤의원, 이재관의원, 박용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

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및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매출액 또는 온누리 상품권 환전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